



기업활동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 대통령령 제15,389호 ; 1997년 6월 11일

❖ 개정이유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각종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 사람의 자격자가 다른 자격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겸직기준과 2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자격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자격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산업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의무고용 인원을 축소·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를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로 보아 이러한 주된 영업분야에서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을 채용하면 이들 자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의무고용 부담을 줄여도록 함(영 제12조제3항).

나. 대기환경기사 및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 각 1

인을 채용한 것으로 보는 등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간의 채용면제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의무고용 부담을 줄여도록 함(영 제12조제7항).

다.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유독물관리자·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을 공동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러한 공동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근무시간·근무일지의 작성·비치 등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동으로 채용된 자와 사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함(영 제15조).

라. 모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그 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오염물질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9조의5).

마. 종전에는 상시근무자 30인부터 근로자의 수에 따라 1인 내지 4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던 산업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범위를 앞으로는 1인 내지 2인을 채용하도록 축소·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2조제1항).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율고용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중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등) ① 법 제29조 제5항·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법 제30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제3항제1호 및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법 제3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제3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3.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법 제30조제1항제3호·제2항제5호·제3항제3호 및 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로 한다.
- ③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 등을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

트(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의 40퍼센트(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때에는 그 분야를 당해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용신고자: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 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저장능력 3천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 월 사용량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야
4.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이해관계인: 제조업(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5.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 이상인 분야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 기기 사용대수가 10대 이상인 분야
- (5)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 (6)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 (7)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채용면제 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사 및 대기환경기사의 자격을 함께 가진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기환경기사 및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자격을 함께 가진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

항 본문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환경관리인 공동채용사업장의 제한)

-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라 함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1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라 함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3종사업장을 1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자”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준수할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자를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자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 본문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제19조의6으로 하고,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5(확인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① 법 제5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5종사업장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5종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부착 대상 사업장이 부착하여야 할 확인기기는 적산전력계와 용수량측정기를 포함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하여야 할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의 규모 및 오염물질의 처리방법별로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2호의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공정거래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가목중 “1만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호바목중 “500톤”을 “1천톤”으로 한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관보 제13,630호
자료정리 / 출판홍보과

☞ 다음 페이지에 계속(별표 3 및 별표 5)



[별표 3]

산업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수	선임방법
1. 토사석 채취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21. 창고, 통신 및 운수업(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의 수탁사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 제외)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법 제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건설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사금액 100억원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임방법
23. 건설업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하며,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임방법
1. 광업 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3. 모파가공 및 모파제품 제조업 4. 신발제조업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제1차 금속산업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화장치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19.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2,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 제조업(제2호 내지 제19호의 사업을 제외 한다)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방송업, 골프장 운영업, 세탁업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3,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